

## 최근 AI 관련 고시, SOP 등 조정사항

(협회-농식품부 협의 후 조정)

- ▲ 오리 출하 후 입식제한기간 14일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및 AI 발생시기에 적용(기준 연중 의무화)하는 것으로 완화('18.11)
- ▲ 살처분보상금 지급 대상 조정으로 보상금은 계약농가에게 지급('19.7)
- ▲ 살처분농가 생계안정비용 상한액 축산농가평균가계비(기준 농업농가평균)로 상향 조정('19.7)
- ▲ 예방적살처분 오리농장 분뇨반출 의무 삭제 및 재사용 허용('21.4)
- ▲ AI 방역조치에 따른 각종 피해, 살처분보상금 문제 등 불합리한 방역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('21.9)
- ▲ AI 최초 신고농가 살처분보상금 10% 경감 기준 마련('21.10)
- ▲ 농장주변 생석회 벨트 의무 삭제 및 농장 입구로 한정('21.10)
- ▲ 지역 구분없이 이동경로상 최단거리의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허용 및 생축차량은 도축장이 민간거점시설로 지정 시 거점소독 생략('21.10)
- ▲ AI 발생 시 오리 상하차반 1일 2농장 방문(기존 1일 1농장) 허용으로 조정('21.10)
- ▲ AI 발생 시 종오리농장 내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창고에 반입(기존 농장 내 반입 금지) 허용으로 조정('21.10)
- ▲ 포도송이 AI 방역대 해제기준 삭제('22.10)
- ▲ 철새 AI 검출시 이동제한은 고병원성으로 확진시로 조정 및 3~10km내 오리 입식 및 종란 반출 허용('22.10)
- ▲ 발생농장 입식시험기간 2주(기존 3주)로 단축 및 시험축에 육계 추가('22.10)
- ▲ 예방적살처분 농가의 살처분보상금은 AI가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 또는 살처분한 날의 전월 평균시세 중 높은 금액으로 보상('23.7)
- ▲ 농장 AI 발생 예찰지역 내 오리 입식 조건부로 제한적 허용('23.8)
- ▲ 예찰지역 내 오리분뇨 해당 방역지역 해제시(기존 전국 해제) 반출 허용('23.8)
- ▲ 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 지원한도액 1억원(기존 5천만)으로 상향('23.9)